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 준용을 위한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24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제24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삭제>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생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삭제>

<u>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삭 제>
---	--------------------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또는 기본법적 지위¹⁾를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과 중복되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는 행정상 강제에 대한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1) 「행정기본법」은 종전까지 행정법 분야에서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없어 공무원과 국민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 법률마다 유사 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 제정되었음.

있으므로,²⁾

-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개정안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

2) 법제처, (2021). 행정기본법 해설서.

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참고로, 2025년 1월 21일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2